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9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배덕기)

□ 제안이유

-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34호, 2009. 1. 7. 공포 · 2009. 7. 9. 시행)되어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정의(뜻)가 규정되어 그 규정을 반영하고 조 번호 조정 및 「지방세법」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하수도법」 제5조의2제3항4의2호 → 제5조제3항6호
- 「하수도법」 제18조 → 제21조

나. 재이용수요금 체납시에 가산금율을 조정함.(안 제33조)

- 100분의 5 → 100분의 3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현 개정 조례안에 증가산금 규정이 누락되어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회기에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별표 산식에 괄호의 1이 안팎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수도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8년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산식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이용수 사용 업체수 및 체납액, 증가산금의 비율은 얼마인가?	○재이용수 사용업체는 16개정도 업체며 체납액은 1개 업체 38만원이고 증가산금은 100분의 3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임.
○우리시의 재이용수 사용 업체수 및 공급량 향후 공급 계획은 얼마인가?	○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6개 업체에 2만5천톤이며 향후 30개 업체 4만5천톤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를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하고, “관리등”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재이용수”란 재이용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수세식화장실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그 밖에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3. “송·배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급수장치”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를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 급수공사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제4조의 앞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①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설치 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밀리미터이상”을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흡수정 이하”를 “흡수정이하”로 하며, “설치 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건당 5천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건당 1만원

나. 갱신 건당 5천원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서”를 “제2항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급수장치중”을 “급수장치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호이상”을 “2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

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재이용수의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재이용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제2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4월”을 “4개

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당해”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계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을 “제27조에 따른 요금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름”을 “갈음”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을 “미납액은 그 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 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제수수료) ①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용가 세대당 4천원. 다만, 계량기구 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천원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천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제6호 중 “제21조의 규정을”을 “제21조를”로 하며, 제7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1월 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명칭을 제48조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3호
의결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하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34호, 2009. 1. 7. 공포·2009. 7. 9. 시행)되어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정의(뜻)가 규정되어 그 규정을 반영하고 조 번호 조정 및 「지방세법」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하수도법」 제5조의2제3항4의2호 → 제5조제3항6호
 - 「하수도법」 제18조 → 제21조
- 나. 재이용수요금 체납시에 가산금율을 조정함.(안 제33조)
 - 100분의 5 → 100분의 3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를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하고, “관리등”을 “관리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재이용수”란 재이용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수세식화장실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그 밖에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3. “송·배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재이용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급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급수장치”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를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1.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2.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 급수공사의 장 번호 및 제목을 제4조의 앞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①재이용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설치 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밀리미터이상”을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흡수정 이하”를 “흡수정이하”로 하며, “설치 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건당 5천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건당 1만원

나. 갱신 건당 5천원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서”를 “제2항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급수장치중”을 “급수장치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호이상”을 “2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

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재이용수의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재이용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제2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4월”을 “4개

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당해”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계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을 “제27조에 따른 요금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름”을 “갈음”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을 “미납액은 그 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 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제수수료) ①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용가 세대당 4천원. 다만, 계량기구 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천원
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천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제6호 중 “제21조의 규정을”을 “제21조를”로 하며, 제7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1월 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명칭을 제48조 앞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하수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재이용수의 요금, 공급 조건, 급수장치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제반사항과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재이용수"라 함은 <u>하수처리수를 수세식화장실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기타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u></p> <p>2. "재처리시설"이라 함은 <u>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u></p>	<p><u>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u></p> <p>제1조(목적) -----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6호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처리수 <u>재이용시설</u>----- ----- ----- -----<u>관리 등</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재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2. "재이용수"란 재이용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수세식화장실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 및 시민의 강 유지용수, 그 밖에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재처리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3. "송·배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재처리시설로부터 급수시설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4. "급수시설"이라 함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4. "급수시설"이란 재이용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5.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p>	<p>5. "급수장치"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p>
<p>6.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p>	<p>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p>
<p>7.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p>	<p>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p>
<p>8.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p>	<p>8. "재이용수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p>
<p>9. "전용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9. "전용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u>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1. <u>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u></p> <p>2. <u>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u></p> <p>가. <u>신규 1건당 10,000원</u></p> <p>나. <u>갱신 1건당 5,000원</u></p> <p>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 ②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u></p> <p>④ (생략)</p> <p>제13조 (공사비의 납부) ① <u>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u>지정기일내</u>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사용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u></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u></p>	<p>② <u>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1. <u>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건당 5천원</u></p> <p>2. <u>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u></p> <p>가. <u>신규 건당 1만원</u></p> <p>나. <u>갱신 건당 5천원</u></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서 -----</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 (공사비의 납부) ① ----- ----- ----- -----<u>지정기일 내</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2항에도-----</u> ----- ----- -----.</p> <p>④ <u>제1항에 따라-----</u> <u>급수장치 중-----</u> ----- -----</p>

현행	개정안
<p>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전까지의 시설물은 시설물은 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p>	<p>----- ----- ----- -----.</p>
<p>제14조 (시설분담금) ① (생략)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생략) ④ 타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2호 이상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제2항에 따라 ----- -----.</p>
<p>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특수가압시설은 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권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 ③ ----- -----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특별한 사유에 <u>의하여</u> 재이용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u>아니한다</u>.</p> <p>② (생략)</p>	<p>----- <u>따라</u> -----</p> <p>-----</p> <p>----- <u>아니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 (신고) ① 재이용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u>각호</u>의 <u>1</u>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송·배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u>기타</u>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p> <p>3.~5. (생략)</p> <p>6. <u>기타</u>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② <u>제1항에</u>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하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재이용수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20조(신고) ① -----</p> <p>-----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그 밖에</u> -----</p> <p>-----</p> <p>3.~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p> <p>-----</p> <p>② <u>제1항에</u> 따른 -----</p> <p>-----</p> <p>-----</p> <p>-----</p> <p>-----</p>
<p>제21조 (판매금지) ① (생략)</p> <p>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u>기타</u> 재이용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u>의한</u> 재이용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생략)</p>	<p>제21조(판매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그 밖에</u> -----</p> <p>-----</p> <p>-----</p> <p>③ ----- <u>따른</u> -----</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 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p>	<p>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 -----해당----- ----- -----.</p> <p>② 제1항에 따라 ----- ----- ----- 따라 ----- -----.</p>
<p>제24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그 밖-----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이용수의 급수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p> <p>② 급수중지는 3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재이용수의 급수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p> <p>② 급수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2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재이용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p>제26조 (요금의 징수) ①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2의 용도별 요금표 및 별표 3의 용도별 구분표에 의하여 재이용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27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용도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이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재이용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p>제26조(요금의 징수) ① ----- ----- ----- -----따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요금) ----- -----따른----- ----- -----.</p>

현행	개정안
<p>제28조 (용도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용도 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용도별 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용도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용도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p>	<p>제28조(용도의 구분) ① ----- ----- 따른 ----- - 따른다. ----- ----- -----.</p>
<p>제29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전 4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p>	<p>제29조(요금의 조정) ① ----- ----- - 따라 해당----- ----- ----- ----- 4개월 ----- ----- -----.</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 ----- ----- 해당 ----- -----.</p>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 ----- ----- ----- 5일 이내 ----- -----.</p>

현행	개정안
<p>④1호 또는 1개소의 재이용수 급수로서 동일 용도에 <u>2개이상</u>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재이용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p> <p>제30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p> <p>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p>	<p>④ ----- -----<u>2개 이상</u>----- ----- -----.</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재이용수 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p>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재이용수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그 달 사용량으로 한다.</p> <p>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또는 1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p>

현행	개정안
<p>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당해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p>	<p>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영업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p>
<p>제31조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 ----- 다음 달 -----. ③ 제1항에 따른 ----- -----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3조 (가산금) ① 사용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3조(가산금) ① 사용자가 제27조에 따른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 ----- ----- 100분의 3에 ----- ----- ----- -----.</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u>가름</u>할 수 있다.</p>	<p>② ----- ----- <u>가름</u>-----.</p>
<p>제34조(납부고지)① (생략)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4조(납부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미납액은 그 달</u>----- ----- -----.</p>
<p>제35조 (일시 재이용수 사용) ①시장은 <u>기타</u> 일시적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u>자에</u>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u>익월분</u>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제35조(일시 재이용수 사용) ① ----- -----<u>그 밖에</u>----- -----<u>자에게는</u>----- ----- -----. ② ----- ----- -----<u>다음 달</u>----- ----- -----.</p>
<p>제36조 (제수수료) ①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36조(제수수료) ①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u>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u></p>	<p>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 <u>수용가 세대당 4천원. 다만, 계량기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u></p>

현행	개정안
<p>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 4,000원</p>	<p>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4천원</p>
<p>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4,000원</p>	<p>3.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천원</p>
<p>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p>	<p>4.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천원</p>
<p>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p>	<p>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천원</p>
<p>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5,000원</p>	<p>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5천원</p>
<p>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p>	<p>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만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그 밖에----- ----- -----.</p>
<p>②시장은 재이용수 급수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재이용수를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 ----- ----- -----자에게는----- -----.</p>
<p>③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수용가는 월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 ----- ----- -----5천원-----.</p>

현행	개정안
<p>제41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이용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p> <p>2.~5. (생략)</p> <p>6. 재이용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이용수를 판매한 자</p> <p>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p> <p>8. · 9. (생략)</p> <p>10.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월이내에 원인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1조(정수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p>1. -----그 밖 에----- 기일 내-----</p> <p>2.~5. (현행과 같음)</p> <p>6. -----제21 조를----- -----</p> <p>7. 제20조에 따른 ----- ----- -----</p> <p>8. · 9. (현행과 같음)</p> <p>10. 그 밖----- --따른 ----- ----- -----</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③ ----- -----따르되----- ----- ----- --1개월 이내 ----- ----- -----.</p>

현행	개정안
<p>제42조 (포상금 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포상금은 <u>당해</u>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u>의하여</u>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p>	<p>제42조(포상금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u>예산의 범위에서</u> ---- -----.</p> <p>② -----<u>해당</u>----- ----- <u>따라</u>-----.</p> <p>③ <u>제1항에 따른</u>----- -----.</p>
<p>제44조 (과태료) 사기 <u>기타</u>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재이용수 급수장치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u>의한</u>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제44조(과태료) ---<u>그 밖에</u> ---- ----- ----- ----- ----- <u>따른</u>----- ----- -----.</p>
<p>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생략)</p> <p>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u>기타</u> 사유로 급수장치를 손실하게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p>	<p>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그 밖에</u>----- ----- -----.</p> <p>③ <u>제2항에 따라</u> ----- -----.</p>

현행	개정안
<p>제46조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p> <p>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이용수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u>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제1항의 업무 <u>위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46조(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p> <p>① ----- ----- ----- -----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탁에</u> ----- ----- -----.</p> <p>④ ----- -----<u>그 밖에</u>----- -----.</p>
<p>제47조 (이의신청) ①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u>기타</u>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u>60일</u>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u>60일</u>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7조(이의신청) ① ----- -----<u>그 밖에</u>----- ----- ----- -----<u>60일</u> 이내----- -----.</p> <p>② ----- -----<u>60일</u> 이내 ----- -----.</p> <p>③ 제1항에 따른 ----- ----- ----- 「지방세법」 -----.</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8조 (준용) ①이 조례에 <u>의한</u> 재이용수 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u>기타</u>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u>의한다</u>.</p> <p>②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부천시수도급수조례</u>를 준용한다.</p> <p>제4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u>의한</u> 시장의 <u>권한</u>중 다음 <u>각호</u>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50조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보칙</u></p> <p>제48조(준용) ① -----<u>따른</u>----- ----- -----<u>그 밖에</u>----- ----- -----<u>따른다</u>.-----</p> <p>② ----- ---- 「<u>부천시 수도급수 조례</u>」 ---- -----.</p> <p>제49조(권한의 위임) ----- -----<u>따른</u>----- <u>권한</u> 중 ---- ---- <u>각 호</u> ----- -----.</p> <p>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